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2. 28(금) 평창군수(농업경영과장)
- 나. 회부일자 : 2003. 6. 20(금)
- 다. 상정일자 :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 6. 20)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운영 계약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게하여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차기운영자를 심의결정토록 하기 위함.
-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농·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로 단체명칭을 변경. (제6조 제①항 제1호)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토록 함. (제6조 제②항)
-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운영기간을 연장신청할 경우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제③항)
- 수탁운영 수수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 제④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2003.03.04) 조례특위에 단순자구수정으로 회부되었다가 자구수정의외에도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유보시켰던 조례로서,

자구수정의외에도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탁신청시간을 만료30일전까지로 하여 차기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조항을 변경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본 조례안중 “농·축산업협동조합”이란 단체명칭이 정확한지?	○ 정확한 단체명이 “농업협동·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틀린 부분임.

5. 토 론 요 지 : 본 조례안중 단체명칭의 틀린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6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1항제1호중 “농·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 표기로써 올바른 단체명을 표기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6조제1항제1호중 “농·축산업협동조합”을 “농업·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중 “농·축산업협동조합”를 “농업·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1.-----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제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농·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제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농업·축산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